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965호

나. 발 의 자 : 성흠제 의원(찬성자 22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8월 11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최근 창경궁로를 비롯해 서울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 관광길 조성이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에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 중심 관광길 조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 역사문화 탐방로의 보행환경 정비, 안내체계 구축 등 역사문화 관광 보행 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공간 특성을 반영한 보행관광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보행관광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보행 중심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나.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 동선에 따른 안내 체계, 휴게시설, 경관·공공디자인 등을 연계하고, 교통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를 포함함(안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행자의 이동이 가능한 서울시 주요 거리의 보행환경 정비와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서울의 정체성과 특성이 반영된 보행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향상 시키고자 발의되었음.

나. 보행관광 기반 체계 조성의 필요성

-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5 관광컨설팅 이슈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보다 개인관광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지역 밀착형 경험을 중시하는 도보 기반의 로컬관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서울시 도보해설관광 이용자 현황 >

구분	'23년 실적	'24년 실적	'25년(상반기)
이용자 수(명)	56,472	64,994	35,863

※ 출처 : 2025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관광체육국)

- 서울시는 2003년부터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도보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5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를 활용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3년간의 도보해설관광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자 수가 약 10~15% 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 증가에 맞추어 보행관광 이용 체계 조성 및 관리·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5년 도보해설관광 운영 코스 >

연 번	코스명(거리)		연 번	코스명(거리)	
1	궁궐(5)	경복궁 코스(1.5km)	29	서울 순례길 (3)	북촌순례길 코스(2.5km)
2		덕수궁 코스(2km)	30		서소문순례길 코스(2.9km)
3		창덕궁 코스(1.5km)	31		한강순례길 코스(4.7km)
4		창경궁 코스(1.5km)	32	가족(6)	경복궁 가족코스(1km)
5		경희궁 · 서대문 코스(2.5km)	33		덕수궁 가족코스(1.3km)
6	왕릉(1)	선정릉 코스(1.3km)	34		창덕궁 가족코스(1.2km)
7	한옥 & 마을(2)	북촌한옥마을코스(2.3km)	35		창경궁 가족코스(0.8km)
8		해방촌과 후암동 코스(4km)	36		낙산성곽 가족코스(2.5km)
9	성곽 둘레길 (5)	낙산성곽 코스 (2km)	37		인사동 가족코스(2km)
10		남산성곽 코스(3.7km)	38	상설코스 (2)	서울시 신청사 코스
11		몽촌토성 코스(4km)	39		남산골 한옥마을 코스
12		율곡로 궁궐담장길 코스(2.6km)	40	시청각 장애인 (4)	덕수궁(시각·청각) 코스
13		경복궁 담장길과 청와대 코스(2.8km)	41		정동·경희궁(청각) 코스
14	도시 재생(4)	청계천 코스(3.7km)	42		한양에서 서울로(청각) 코스
15		[서울로7017]한양에서 서울로 코스(2.5km)	43		서울로 건축기행(청각) 코스
16		광화문광장 코스(2.5km)	44	무장애(1)	경복궁·청와대 코스(3km)
17		서울의 사라진 섬, 잠실 코스(4km)	45	야간 코스(9)	서울로 야행 코스(2.0km)
18	건축 & 예술(5)	성북동 코스(3km)	46		낙산성곽 코스(1.0km)
19		서촌의 오래된 골목산책(3.5km)	47		청계천코스(1.0km)
20		대학로 건축투어 코스(2.1km)	48		덕수궁코스(1.0km)
21		모던타임즈인정동 코스(1.7km)	49		정동코스(1.0km)
22		국립 중앙박물관정원 코스(1.7km)	50		창경궁(1.0km)
23	전통 & 문화(6)	인사동 코스(2km)	51		광화문광장(1.0km)
24		성균관 공간과 인물들 코스(1.5km)	52		인사동(1.2km)
25		전통시장 힐링로드(2.8km)	53		남산골한옥마을(1.0km)
26		양천로 검재정선 코스(1.6km)			
27		용산 한강대로 이야기길(1.6km)			
28		서대문형무소역사관(1.5km)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안은 역사문화보행관광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개발·활성화 사업,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지원 및 세부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조문을 규정하고자 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역사문화보행관광 인프라 조성) ① 시장은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행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역사문화자원과 연결된 보행환경의 개선 및 보행로 정비 2. 관광 안내시설, 쉼터, 표지판 등 관광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완 3. 보행 동선을 고려한 거리 경관, 공공디자인 등 주변 공간의 정비 4. 보행 중심 관광구간의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정 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 의견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④ 시장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생략)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u>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u>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u>증진, 관광자원 개발 및 보행관광 활성화 등</u>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 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 중심의 관광 인프라 구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관광자원 개발 및 보행관광 활성화 사업은, 현행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및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해당하므로 각 조문에 분리하여 신설·추가하는 것이 법 체계상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의 법령 준수 의무와 세부 사항의 규칙 위임은 조례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집행부 또한 동일한 의견을 견지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을 드림.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의안번호
2965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성흠제(1인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제안이유〉 ○ 현행 동 조례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 중심 관광길 조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 역사문화 관광 보행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임 〈주요 입법 요지〉 ○ 보행 중심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를 포함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추진경과	○ 2025. 8. 11.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발의자: 성흠제 의원) - (찬성자) 강석주, 김규남, 김성준, 김원태, 남창진 등 22명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보행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관광정책의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규정하는 관광진흥 조례의 특성과 실제 업무수행 가능 소관 실국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2 제1항: 본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4항에 산입하여 조정 - 안 제7조의2 제2항: 본 조례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2항에 '보행관광 활성화' 명시 - 안 제7조의2 제3·4항: 삭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본 조례 제20조에 규정)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조례안	
	제7조의2(역사문화보행관광 인프라 조성) ① 시장은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행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역사문화자원과 연결된 보행환경의 개선 및 보행로 정비 2. 관광 안내시설, 쉼터, 표지판 등 관광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완 3. 보행 동선을 고려한 거리 경관, 공공디자인 등 주변 공간의 정비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 거리를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생략)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관광자원 개발 및 보행관광 활성화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④ (생략)	

	4. 보행 중심 관광구간의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삭제>		
대응방안	○ 발의 의원 방문 및 설득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팀장	이소라(☎2133-2792)	담당	정예나(☎2133-2796)